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8. 24 선고 2018가합501445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1. A

피 고 2. 망 B의 소송수계인

변론 종결 2018. 7. 27

판결 선고 2018. 8. 24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각 1/4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7. 11. 6. 접수 제211585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B과 원고 A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 한다)을 각 3'4,1/4지분으로

공유하고 있었던 사실, B은 2017. 9. 13. 원고 A의 위임 없이 이 사건부동산 전부를 피고에
현물출자한 사실(이하 '이 사건 현물출자계약'이라 한다),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
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 11. 6. 접수 제211585호로 이 사건현물출자계약을 원인으로 한
소유권이전등기(이하 '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'라 한다)를마친 사실, B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
2018. 6. 30. 사망하여, 그 상속인들로는 B의 자녀들인 원고 망 B의 소송수계인 C, D, E이 있는
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서 다툼이없거나, 갑 제1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
인정할 수 있다.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이 사건 현물출자계약 중 원고 A의 1/4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무권리자의
처분행위로 무효이고, 위와 같이 법률행위의 일부분을 무효로 보는이상, 민법 제137조에 따라 이 사건
현물출자계약 전부가 무효가 된다.

따라서 피고는 소유권에 기한 원상회복을 구하는 원고들에게, 원고 A에 대하여는 이 사건 부동산
1/4지분에 대하여, 원고 C, D, 표에 대하여는 B 지분(3/4) 중 위 각 원고들의 상속지분(1/3)에 따른
이 사건 부동산의 1/4지분에 대하여 마쳐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.
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.

재판장 판사 이동연판사 박성용판사 최유빈

별지